

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26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06. 10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남북교류 중추도시로써 급변하는 지역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등
-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신규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승인('04.5.28)된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현행 2개 사업소에 도시개발사업소를 추가로 신설함(안 별표3)
- 도시개발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규정함(안 제16조제3항)
 - 신도시조성사업
 - 택지개발사업
 - 산업단지조성사업

과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과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도시개발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신도시조성사업
2. 택지개발사업
3. 산업단지조성사업

별표 3의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란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도시개발사업소	과주시 교하읍 동패리 산 5번지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16조 (업무) ①~②(생략) <u>〈신설〉</u>	제16조 (업무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도시개발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. 1. 신도시 조성사업 2. 택지개발사업 3. 산업단지 조성사업	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개정이유

-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남북교류 중추도시로써 급변하는 지역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등
-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신규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승인('04. 5. 28)된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현행 2개 사업소에 도시개발사업소를 추가로 신설함.(안 별표3)
- 도시개발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규정함.(안 제16조제3항)
 - 신도시조성사업
 - 택지개발사업
 - 산업단지조성사업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신도시 개발 및 각종 택지개발사업, LG Philips LCD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급변하는 지역발전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신규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도시개발사업소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것임.
- 급변 도시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라 우리 시는 현행 2개 사업소에서 3개 사업소를 운영하게 되며 신설되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신도시 조성사업, 택지개발사업,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됨.
- 도시개발사업소는 급변 승인된 인력 20명과 지난해 7월 승인된 신도시 지원 인력 3명(6급 1, 7급 1, 8급 1)을 포함하여 총 23명으로 운영하게 되며 급변 승인된 관리담당, 택지개발담당, 산업입지담당, 시설담당 등 4개 담당(팀)과 현재 도시과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신도시 지원담당(팀)이 도시개발사업소로 흡수되어 총 5개 담당(팀)으로 운영될 예정임.
- 한편 도시개발사업소는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산 5번지에 설치되어 운영되며 오는 2007. 6. 30일까지 한시 기구 및 정원으로 운영 예정임.

- 금번 도시개발사업소의 신설로 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시 자체적으로 기 추진 중인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LG필립스 LCD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됨.

지 방 자 치 법

제 105조 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1994. 3. 16>